



국 토 교 통 부

수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경유)

제목 '23년 하반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분 통지(코람코자산신탁)

1.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2661(2024.9.26.)호 관련입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등에 따라 귀 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1)과 같이 행정처분하니 (붙임2)작성양식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10일 이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 위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시고 (붙임3)에 서명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 결과 미보고 및 보고사항(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재발방지확약서) 누락 시 추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 및 제출방법 : 리츠정보시스템 → 검사/감독 → 위반사항 → 조치결과
4.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행정처분 내용.
2. 이행결과 보고서(작성양식).
3. 재발방지확약서. 끝.



주무관 **김보희** 행정사무관 **이재훈** 부동산투자제 전결 2024. 10. 30.
도과장 **김승범**

협조자

시행 부동산투자제도과-2967 (2024. 10. 30.)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12 팩스번호 044-201-5538 / kbh520@molit.go.kr / 비공개(6,7)